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 5. .

법제처 심사 전

법무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기구 일부 및 직급상향 조정한 정원 일부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에 기구 1개를 신설하며, 법무부 소속기관 정원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5급→4·5급),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에 설치한 기구와 직급상향 조정한 정원의 존속기한 연장 및 기구 신설(안 제9조제5항, 부칙)

1) 범죄예방 관련 데이터 통합관리·분석 및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 설치한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법무부의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2) 마약류사범의 체계적·전문적인 재활 및 재범 예방 정책 추진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 교정본부에 설치한 마약사범재활팀, 교정시설의 점검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법무부 교정본부에 설치한 특별점검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법무부의 정원 9명(4·5급 1명, 5급 4명, 6급 4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3) 외국인 종합정보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설치한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법무부의 정원 2명(5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4) 외국인 인권침해 예방·대응 및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2026년 6월 1일부터 2029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이민자인권·권익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5급 2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배정함.

나.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에 설치한 기구와 직급상향 조정한 정원의 존속기한 연장 및 직급상향 조정 정원 추가(안 별표12의2 및 부칙)

1) 관할 교정시설 내 발생한 범죄의 신고·접수·수사·처리 및 교정

사고 조사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서울 지방교정청·대구지방교정청·대전지방교정청·광주지방교정청에 설치한 광역특별사법경찰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2) 교도소·구치소 내 발생한 범죄의 신고·접수·수사·처리 및 교정 사고 조사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대구 교도소·대전교도소·안양교도소·광주교도소·경북북부제1교도소와 서울구치소·서울남부구치소·서울동부구치소·부산구치소·수원구치소·인천구치소에 설치한 특별사법경찰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교도소 등의 정원 11명(5급 1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3) 출국대기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및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설치한 출국대기실운영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출입국·외국인청 등의 정원 2명(5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4) 출입국 업무 분야별 역량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법무부 소속기관인 출입국·외국인청 등의 정원 9명(5급 9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5) 법무부 소속기관인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심사과와 전국 크루즈 출입국심사 담당 부서 및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출입국·외국인청의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을 2026년 6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상향 조정(4.5급 1명)함.

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안 제9조제12항제11호, 제17항제6호, 제18항, 제27조제9항제1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난민심의과 및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을 “난민심의과·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및 이민자인권·권익팀”으로,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을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 및 이민자인권·권익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제1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7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외국인 유입 규모 및 적정 수준의 사증 발급 규모의 산정·공표 등에 관한 사항

같은 조에 제1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⑱ 이민자인권·권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총괄
2. 외국인 인권 관련 국제인권기구 권고사항 이행계획 마련 및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심의 대응 등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점검·현장 조사, 인권 취약 요인 발굴·개선 및 피해 구제 대책 마련 등에 관한 사항
5.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다른 외국인의 인신매매등 방지에 관한 사항

6. 외국인 인권침해를 개선·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홍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국인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제9항제13호 중 “공항 내 보안취약지역”을 “출입국심사장”으로 한다.

법무부령 제1051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6년 5월 31일”을 “2028년 5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6년 5월 31일”을 “2028년 5월 31일”로 하며, 같은 부칙 제3조 제1항 중 “2026년 5월 31일”을 “2028년 5월 31일”로, “2026년 6월 1일”을 “2028년 6월 1일”로 한다.

법무부령 제1067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26년 5월 31일”을 “2028년 5월 31일”로, “2026년 6월 1일”을 “2028년 6월 1일”로 한다.

법무부령 제1079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26년 5월 31일”을 “2028년 5월 31일”로, “2026년 6월 1일”을 “2028년 6월 1일”로 한다.

별표 12의2 중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 “9”를 “10”으로, 출입국관리사무관 “114”를 “113”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이민자인권·권익팀은 2029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팀의 존속기한까지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이민자인권·권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중 제9조제18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은 외국인정책과장이, 제3호의 사항은 이민통합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2의2의 정원 1명(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 1명)은 202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고, 2029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2의2의 정원 1명(출입국관리사무관 1명)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① ~ ④ (생 략)	제9조(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출입국기획과·출입국심사과·체 류관리과·지역체류지원과·이민 조사과·이민정보과·외국인정책 과·국적과·이민통합과·난민정 책과·난민심의과 <u>및 외국인정 보빅데이터팀</u> 을 두며, 출입국기 획과장, 출입심사과장, 체류관 리과장, 지역체류지원과장, 이 민조사과장, 이민정보과장, 외 국인정책과장, 국적과장, 이민 통합과장, 난민정책과장 및 난 민심의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 기관으로 보하고, <u>외국인정보빅 데이터팀장</u> 은 서기관 또는 출입 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 ----- ----- ----- ----- ----난민심의과· <u>외국인정보빅 데이터팀</u> <u>및 이민자인권·권익 팀</u> ----- ----- ----- ----- ----- ----- ----- <u>외국인정보빅 데이터팀장</u> <u>및 이민자인권·권 익팀장</u> 은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 리사무관으로 보한다.
⑥ ~ ⑪ (생 략)	⑥ ~ ⑪ (현행과 같음)
⑫ 외국인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⑫ 외국인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외국인 유입 규모 및 적정	<u><삭 제></u>

수준의 사증 발급 규모의 산정
· 공표 등에 관한 사항

⑬ ~ ⑭

⑮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6. <신설>

⑯ <신설>

⑬ ~ ⑭ (현행과 같음)

⑮ -----
-----.

1. ~ 5. (현행과 같음)

6. 외국인 유입 규모 및 적정 수
준의 사증 발급 규모의 산정·
공표 등에 관한 사항

⑯ 이민자인권·권익팀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 인권 보호 및 권익증
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총괄

2. 외국인 인권 관련 국제인권
기구 권고사항 이행계획 마련
및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심의
대응 등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
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 인권침해에 관한 실
태점검·현장 조사, 인권 취약
요인 발굴·개선 및 피해 구제
대책 마련 등에 관한 사항

5.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외국인의 인신매

등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제15호의2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략) 13. <u>공항 내 보안취약지역</u>의 순찰 및 불법 출입국자의 조사 14. ~ 16. (생략) 법무부령 제1051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 마약사범재활팀, 특별점검팀, 서울지방교정청·대구지방교정청·대전지방교정청·광주지방교정청의 광역특별사법경찰팀, 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안양교도소·광주교도소·경북북부제1교도소·서울구치소·서울남부구치소·서울동부구치소·부산구치소·수원구치소·인천구치소의 특별사법경	----- ----- ----- -----. 1. ~ 12. (현행과 같음) 13. <u>출입국심사장</u>의 순찰 및 불법 출입국자의 조사 14. ~ 16. (현행과 같음) 법무부령 제1051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 ----- ----- ----- ----- ----- ----- ----- ----- ----- ----- ----- ----- ----- ----- ----- ----- -----
--	---

찰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
청 출국대기실운영팀, 김해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국대
기실운영팀은 각각 2026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외국인
정보빅데이터팀은 2026년 5월 3
1일까지 존속한다.

③ (생략)

제3조(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12명(보호사
무관 2명, 보호주사 1명, 보호주
사보 1명, 교정관 4명, 교감 4
명), 별표 7의2의 정원 11명(교
정관 11명), 별표 12의2의 정원
11명(출입국관리관사무관 11명)
은 각각 2026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6월 1일 이후
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
각 별표 5의2의 정원 12명(보호
주사 2명, 보호주사보 1명, 보호
서기 1명, 교감 4명, 교위 4명),

----- 2028년 5월 3
1일-----.

② -----

----- 2028년 5월 31
일-----.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

----- 2028년 5월 31일-----
----- 2028년 6월 1일 -----

별표 7의2의 정원 11명(교감 11명), 별표 12의2의 정원 11명(출입국관리주사 11명)으로 본다.

② (생략)

법무부령 제1067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법무부령 제1051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정원으로서는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2명을 제외한 별표 5의2의 정원 2명(출입국관리사무관 2명)은 2026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2의 정원 2명(출입국관리주사 2명)으로 본다.

법무부령 제1079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
으로 조정되는 별표 5의2의 정
원 1명(서기관 또는 교정관 1

② (현행과 같음)

법무부령 제1067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

2028년 5월 31일-----

2028년 6월 1일-----

-----.

법무부령 제1079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

명)은 <u>2026년 5월 31일까지</u> 존	--- <u>2028년 5월 31일</u> -----
속하며, <u>2026년 6월 1일</u> 이후에	----- <u>2028년 6월 1일</u> -----
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
5의2의 정원 1명(교정관 1명)으	-----
로 본다.	-----.

[별표 12의2]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8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2,646	2,646	-
일반직 계	2,646	2,646	-
·	·	·	
·	·	·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	<u>9</u>	<u>10</u>	+1
·	·	·	
·	·	·	
출입국관리사무관	<u>114</u>	<u>113</u>	-1
·	·	·	
·	·	·	